

# 모잠비크 (Mozambique)

## 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사회보험 적용대상	국내 거주 민간부문 임금근로자 및 자영자	견습생 및 기간직 포함 근로자, 자영자, 특별제도 미포함 공공부문 근로자	-
사회보험 보험료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3% / 7% / 4%	3% / 7% / 4%	-
사회보험 보험료 부과 하한 / 상한 소득	법정 월 최저임금 (직업군별로 상이) / 없음	법정 월 최저임금 (직업군별로 상이) / 없음	법정최저임금 상승
사회보험 노령연금 수급요건	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이며, 보험료 납부기간 20년 이상	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이며, 보험료 납부기간 20년 이상	-
사회보험 노령연금 지급률	가입자 최종 240개월간 월평균소득 x 보험료 납부개월 수 x 50%	가입자 최종 5년간 월평균소득 x 보험료 납부개월 수 ÷ 420개월	산식 일부 변경
일시금 (사망일시금)	사망 전 6개월간 월평균소득의 6배(고용 중인 경우) 또는 노령연금월액의 6배(아닌 경우)의 일시금. 부양자녀 1명당 1개월 치 증액	사망 전 6개월간 월평균소득의 6배(고용 중인 경우) 또는 노령연금월액의 6배(아닌 경우)의 일시금	산식 일부 변경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89(사회보장), 2002(사회부조)
- 현행법 : 2007(사회보호), 2009(사회부조규칙), 2011(사회부조), 2017(사회보호규칙)

## 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

## 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
  - 당연적용 : 견습생 및 기간직 포함 근로자, 자영자, 특별제도 미포함 공공부문 근로자
  - 임의적용 : 이전 납부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실업자
  - 특별제도 : 일부 공공부문 근로자 및 군인
- 사회부조 : 빈곤한 모잠비크 국민

## ○ 가입자

- 사회보험
  - 월 소득의 3%, 임의가입의 경우 최종 6개월간의 근로기간에 대한 월평균소득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산업군별 법정최저임금(농업종사자 및 일부 어민에 해당하는 4,063.50 meticais에서 금융업 및 은행업 종사자에 해당하는 11,897.60 meticais 사이)
  - 가입자 납부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급여의 재원으로도 사용
- 사회부조 : 없음

## ○ 자영자

- 사회보험
  - 월 신고소득의 7%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산업군별 법정최저임금(농업종사자 및 일부 어민에 해당하는 4,063.50 meticais에서 금융업 및 은행업 종사자에 해당하는 11,897.60 meticais 사이)
  - 자영자 납부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급여의 재원으로도 사용
- 사회부조 : 없음

## ○ 사용자

- 사회보험
  - 월 임금지급총액의 4%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산업군별 법정최저임금(농업종사자 및 일부 어민에 해당하는 4,063.50 meticais에서 금융업 및 은행업 종사자에 해당하는 11,897.60 meticais 사이)
  - 사용자 납부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급여의 재원으로도 사용
- 사회부조 : 없음

## ○ 정부

- 사회보험
  - 없음, 사용자로서 기여
- 사회부조
  - 총 비용

## 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으로 납부기간 20년 이상(크레딧 인정 가능)인 경우
  - 납부기간은 질병, 출산, 산재, 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군복무 기간으로 크레딧 인정 가능
  - 부분연금 :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으로 납부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(크레딧 인정 가능)인 경우
  - 조기연금 : 납부기간 35년 이상, 연령제한 없음
  - 고용은 중단되어야 함
- 노령연금(사회부조, 소득 및 자산 조사)
  -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으로 가족 구성원 중에 근로능력을 가진 자가 없어야 함

## 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 - 정상퇴직연령보다 어리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근로불능으로 판정받았으며 장애 발생 전 5년 동안 30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(크레딧 인정 가능)
  - 납부기간은 질병, 출산, 산재, 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군복무 기간으로 크레딧 인정 가능
  - 장애연금은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 중단되고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- 장애연금(사회부조, 소득 및 자산 조사)
  - 정상퇴직연령보다 어리고 영구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으로 판정받았으며 가족 구성원 중에 근로능력을 가진 자가 없어야 함
  - 수급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 다른 연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특정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함

## 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 - 사망자가 노령 혹은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또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
  - 수급권 있는 유족은 피부양 배우자, 18세 미만 고아(기술학교 학생인 경우 22세, 대학생의 경우 26세, 장애가 있는 경우는 연령 제한 없음)
- 장제비(사회보험)
  - 보험료 납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가입자의 사망 시, 유족배우자, 부모, 고아, 또는 기타 자손에게 지급

## 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가입자의 최종 5년간의 월 평균소득 x 보험료 납부 개월 수 ÷ 420개월
  - 노령연금 산정을 위한 최대 보험료 납부기간은 420개월
  - 노령연금 최저 연금월액은 농업 종사자 및 일부 어민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(4,063.50 meticaiss)의 90%
  - 부분연금은 노령연금의 50% 지급
  - 조기연금은 노령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
- 노령연금(사회부조, 소득 및 자산 조사)
  - 가족 구성에 따라 540 ~ 1,000 meticaiss 지급
  - 사회부조 노령연금은 매2달마다 지급
  - 사회부조 노령연금 급여액은 매년 재검토

## 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 - 노령연금액의 60% 지급
- 장애연금(사회부조, 소득 및 자산 조사)
  - 가족 구성에 따라 540 ~ 1,000 meticaiss 지급
  - 사회부조 장애연금은 매2달마다 지급
  - 사회부조 장애연금 급여액은 매년 재검토

## 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 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수급 받고 있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노령연금의 50%를 45세 이상의 미망인 또는 50세 이상의 홀아비에게(근로능력 완전불능으로 판정 시 연령제한 없음) 평생 지급, 45세 미만의 미망인과 50세 미만의 홀아비에게는 5년간 지급
  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 받고 있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노령연금의 50%가 수급권 있는 고아에게 균분 지급되며, 완전고아에게는 100% 지급
  - 유족연금의 합계액은 사망자가 수급 받고 있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노령연금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사망일시금(사회보험)
  - 사망자가 고용 중이었으면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월평균소득의 6배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, 아닌 경우 사망자가 수급 받고 있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노령연금월액의 6배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- 장제비(사회보험)
  - 수급권 있는 유족 또는 장례비를 부담한 자에게 5,000 meticaiss 지급

- 노동고용사회보장부(Ministry of Labor,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)
  - 사회보험체계에 대한 전반적 감독 제공
  - <http://www.mitess.gov.mz>
  
- 국가사회보장기구(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)
  - 3자 위원회와 위원장의 관리 하에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  - <http://www.inss.gov.mz>
  
- 성, 아동, 사회행동부(Ministry of Gender, Child, and Social Action)
  - 사회부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감독 제공
  - <http://www.mgcas.gov.mz>
  
- 국가 사회 행동 기구(National Social Action Institute)
  - 사회부조 프로그램 운영
  - <http://www.inas.gov.mz>

<2019년 ISSA 자료>